

청주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19가단364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민경철

피고B

변론 종결2021. 1. 13.

판결 선고2021. 2. 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2015. 7. 22. 접수 제103794호로
경료된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피고와 C[D생] 사이에 2016. 11. 30. 체결된 확정채권양도계약을
24,932,56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932,562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 1) 원고는 C에게 아래 표 '대출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대출금액'란 기재 금원을 대출해 주었는데, 아래 표 순번 2번 대출은 2015. 8. 7.자 대출의 만기를 연장한 대환대출이었다.
- 2) C은 2017. 9.~2017. 12.경 각 대출금 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10. 16. 기준 원고의 C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의 합계액은 합계 24,932,562원이며, 구체적 계산내역은 아래 표 '대출원리금 잔액'란 기재와 같다.

1	2015. 9. 8.	30,000,000	4,290,747	1,446,977	5,737,724
2	2017. 8. 17.	15,000,000	14,755,615	4,439,223	19,194,838
합계	19,046,362	5,886,200	24,932,562		

나. C의 처분행위 및 재산상태

- 1) E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 7. 22. 접수 제103794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및 C', 채무자 'E', 채권최고액 '559,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C은 2016. 11. 30. 피고와 위 근저당권부 채권 중 자신의 지분 1/2에 대한 확정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확정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법원 2016. 11. 30. 접수 제1446042호로 위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 중 C 지분에 대하여 전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2) 이 사건 확정채권양도계약 체결일 당시 C은 적극재산으로 위 근저당권부채권(1/2 지분) 이외에 시가 50,000,000원 상당인 청주시 상당구 F 전 312m²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잔존 대출원금채무인 19,046,362원(4,290,747원+14,755,615원)

이외에도 G조합, (주) H, I(주) 등 금융기관에 대하여 합계 68,000,000원 이상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청주시 상당구청, J 주식회사, (주)H, G조합, I 주식회사의 각 대표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내지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원고가 늦어도 2017. 8. 17. 채무자 C에게 대환대출을 실행할 당시 C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 양도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사해행위취소권의 제척기간인 1년을 도과한 2019. 12. 6.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내에 제기되어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7. 8. 17. C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와 이 사건 확정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원고의 C 사이의 각 대출약정일, 위 별지 순번 2번 대출약정이 기존 2015. 8. 7.자 대출금채권의 만기연장을 위한 대환대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C에 대한 각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확정채권양도계약 체결일 이전인 2015. 9. 8. 및 2015. 8. 7.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3360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고, 이에 기하여 각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 할 것이므로, 이는 C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와 C은 2015. 7. 22. E에게 피고의 200,000,000원, C의 100,000,000원을 합친 300,000,000원을 대여하고, E로부터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설정받았다가, 피고가 2016. 11. 30. C에게 C 채권액 100,000,000원에서 C이 E로부터 변제받은 약 35,000,000원을 공제한 65,7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았던 것으로, C에게 2016. 12. 1. 및 같은 달 7. 위 약정대금 65,7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수익자가 선의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수익자에게 있다. 여기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처분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수익자의 선의를 선뜻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반복하여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원상회복의 방법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써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써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순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및 차순위 근저당권자인 K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7. 11. 24. 및 2018. 7. 26.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L, M(중복)]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2020. 4. 3. 이 사건 부동산이 410,534,000원에 매각되어, 2020. 6. 25. 배당종결된 사실이 종료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정채권양도계약의 목적물인 근저당권부채권은 그 자체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므로,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으로서 2019. 10.

16.까지 발생한 원금 및 연체이자만으로도 24,932,562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앞에서 본 사실 및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559,000,000원), 피고 주장의 실제채권액(원금 300,000,000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410,534,000원에 매각된 점, 피고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C 지분 1/2)에 대한 공동담보가액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24,932,562원을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두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24,932,562원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가 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확정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24,932,56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4,932,562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조은아

별지